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광진구 소속 전 병 주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최근 일명 “하준이법”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시행을 앞두고
있고 경사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증가함에
따라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일부
개정하여 개정된 상위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.

□ 이에 본 개정조례는

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고임목 등 주차된
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

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「주차장법」이 2020년 6월 25일
시행될 예정이므로, 이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
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